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731

발의연월일: 2024. 7. 15.

발 의 자 : 윤준병 • 이성윤 • 박민규

이상식 · 복기왕 · 민형배

서영교 · 허종식 · 이해식

민홍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약사의 면허나 자격증을 대여받아 의료기관·약국을 불법으로 개설·운영하는 이른바 '사무장병원·약국' 운영 혐의로 적발되어 환수결정된 병원·약국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1,712개이고, 총 환수결정액은 약 3조 4,000억원에 이르나 환수율은 6.79%에 불과한 실정임.

그러나 불법개설 사무장병원·약국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·지능화되어 근절이 쉽지 않고, 일선 수사기관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 등으로 수사가 장기화(평균 11개월)되고 있으며, 그 사이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과 폐업·재산 은닉 등으로 건보 재정이 악화되고 있음.

이에 보건의료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 게 「의료법」 및 「약사법」 위반 범죄 중 '의사·약사 아닌 자가 병 원·약국을 개설하는 범죄 등'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불법개설 사무장병원·약국의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7조의4 신설). 법률 제 호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조의4(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)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에 따라 그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과 4급 이상의 직원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, 그밖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.
 - 1. 「의료법」 제87조 및 제87조의2제2항제1호·제1호의2·제2호(같은 법 제33조제8항 및 제10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)의 범죄
 - 2. 「약사법」 제93조제1항제1호·제1호의2·제2호 및 제95조제1항 제2호의 범죄(같은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)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7조의4(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
	원)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
	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
	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추
	천에 따라 그 근무지를 관할하
	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
	한 사람 중 임원 및 분사무소
	의 장과 4급 이상의 직원은 관
	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
	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
	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,
	그 밖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
	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
	 행한다.
	 1. 「의료법」 제87조 및 제87
	조의2제2항제1호·제1호의2·
	제2호(같은 법 제33조제8항
	및 제10항을 위반한 경우에
	한정한다)의 범죄
	2. 「약사법」 제93조제1항제1
	호·제1호의2·제2호 및 제95
	조제1항제2호의 범죄(같은 법
	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

<u>한정한다)</u>

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

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국민건

 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의견을

 들어야 한다.